

# 가업승계지원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중심으로

오종현



# 가업승계지원제도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① **기업영속을 통한 경제활력 유지**
- ② **고용유지 및 창출**

###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① **승계자의 지분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유지**
- ② **승계자의 내 회사라는 애착심 (이기심)제고**

가업상속공제 vs 가업승계증여특례

구분	가업상속공제(사후)	가업승계증여특례(사전)	
대상	중소기업	좌동	
	중견기업(매출5천억 미만)		
한도	최대 600억	좌동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20년 400억, 30년 600억		
기본공제		10억원	
세율	일반상속세율(10%~50%)	과세표준 120억이하 10% 120억초과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 10년보유	좌동 & 60세이상 부모	
상속인(수증자)의 요건 (요건충족시 그 배우자 가능)	18세이상 상속인 & 2년전부터 가업종사	18세이상 거주자(자녀) & 3년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	기간	5년	좌동
	업종유지	대분류내 변경 허용	좌동
	고용	근로자수(또는 총급여) 5년평균 90%유지	
	자산	40%이상 처분 금지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중소기업은 납부유예선택 가능	좌동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15년	
공동 상속/수증	2016.2월부터 가능	2020.1월부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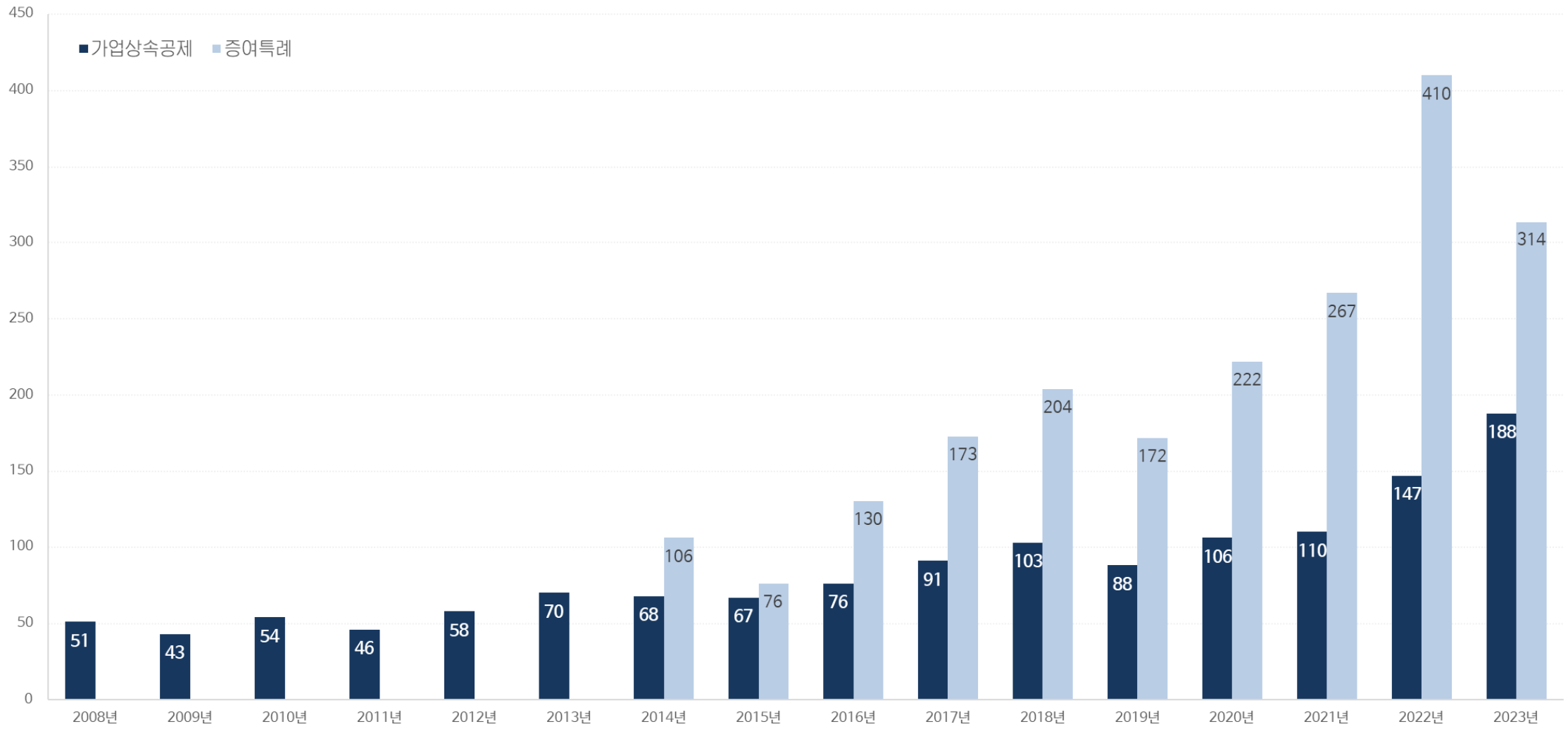
#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도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 건수



# 기업상속공제 활용도

(단위:백만원)

년도별	상속재산가액(결정기준)A			유가증권 상속(결정기준)B			기업상속공제C			기업상속공제 비중(C/A)		기업상속공제 비중(C/B)	
	건수	금액	평균금액	건수	금액	평균금액	건수	금액	평균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19,944	58,073,198	2,912	3,048	14,947,907	4,904	188	837,767	4,456	0.94%	1.44%	6.17%	5.60%
2022년	15,760	67,793,080	4,302	2,247	28,461,560	12,666	147	342,952	2,333	0.93%	0.51%	6.54%	1.20%
2021년	12,749	30,618,767	2,402	1,743	2,861,570	1,642	110	347,505	3,159	0.86%	1.13%	6.31%	12.14%
2020년	10,181	24,981,063	2,454	1,484	3,681,629	2,481	106	421,049	3,972	1.04%	1.69%	7.14%	11.44%
2019년	8,357	19,755,409	2,364	1,377	2,292,010	1,664	88	236,343	2,686	1.05%	1.20%	6.39%	10.31%
2018년	8,002	18,278,452	2,284	1,190	1,703,382	1,431	103	234,421	2,276	1.29%	1.28%	8.66%	13.76%
2017년	6,986	14,100,075	2,018	1,075	1,938,951	1,804	91	222,598	2,446	1.30%	1.58%	8.47%	11.48%
2016년	7,393	12,841,915	1,737	967	1,997,660	2,066	76	318,378	4,189	1.03%	2.48%	7.86%	15.94%
2015년	6,592	10,183,507	1,545	782	1,267,841	1,621	67	170,593	2,546	1.02%	1.68%	8.57%	13.46%
2014년	7,542	10,936,599	1,450	1,014	1,330,593	1,312	68	98,608	1,450	0.90%	0.90%	6.71%	7.41%
2013년	6,275	8,648,595	1,378	878	723,952	825	70	93,307	1,333	1.12%	1.08%	7.97%	12.89%
2012년	6,201	9,460,798	1,526	794	939,080	1,183	58	34,345	592	0.94%	0.36%	7.30%	3.66%
2011년	5,720	8,878,630	1,552	766	804,001	1,050	46	32,508	707	0.80%	0.37%	6.01%	4.04%
2010년	4,547	7,645,270	1,681	681	522,991	768	54	38,618	715	1.19%	0.51%	7.93%	7.38%
2009년	4,340	8,573,480	1,975	771	879,869	1,141	43	9,795	228	0.99%	0.11%	5.58%	1.11%
2008년	3,997	7,502,306	1,877	647	915,197	1,415	51	4,048	79	1.28%	0.05%	7.88%	0.44%

# 기업승계증여특례 활용도

(단위:백만원)

년도별	증여재산가액(결정기준)A		유가증권 증여(결정기준)B		기업승계특례C		기업승계특례비중(C/A)		기업승계특례비중(C/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년	530,004	77,967,412	18,593	5,895,322	314	421,718	0.06%	0.54%	1.69%	7.15%
2022년	711,875	92,370,763	24,711	7,049,587	410	745,782	0.06%	0.81%	1.66%	10.58%
2021년	800,109	117,486,960	22,225	6,896,250	267	402,524	0.03%	0.34%	1.20%	5.84%
2020년	461,800	76,657,482	16,979	4,837,109	222	316,951	0.05%	0.41%	1.31%	6.55%
2019년	400,299	74,094,685	15,809	4,527,522	172	238,280	0.04%	0.32%	1.09%	5.26%
2018년	376,823	65,936,519	17,640	4,202,323	204	311,920	0.05%	0.47%	1.16%	7.42%
2017년	326,316	36,738,372	17,549	4,120,435	173	263,596	0.05%	0.72%	0.99%	6.40%
2016년	282,889	28,009,391	18,029	3,489,083	130	202,257	0.05%	0.72%	0.72%	5.80%
2015년	267,136	24,018,183	9,929	2,811,900	76	107,798	0.03%	0.45%	0.77%	3.83%
2014년	226,811	22,966,018	12,554	3,038,775	106	139,329	0.05%	0.61%	0.84%	4.59%
2013년	229,143	31,684,065	11,955	3,743,565						
2012년	197,717	24,906,039	10,595	3,298,223						
2011년	251,506	30,321,207	14,107	3,365,383						
2010년	207,399	28,898,571	8,461	2,334,728						
2009년	214,665	22,811,040	6,465	2,062,120						
2008년	228,334	27,295,616	9,943	4,282,675						

(자료: 국세통계 <http://stats.nts.go.kr>)





# 기업의 흥망성쇠와 가업승계증여특례

현재 기업가치 200억(배우자, 자녀2)  
사업무관자산 없음  
50%인 100억 증여특례 실행  
특례증여세 9억 납부

~15년 후~

311.59억(133.76억)

$$100 + 155.8 = 255.8 \text{억}$$

(96.8 + 14.02 = 118.02억)

3%상승

200억(77.9억)

$$100 + 100 = 200 \text{억}$$

(68.9 + 14.02 = 82.92억)

현상 유지

126.65억(41.23억)

$$100 + 63.33 = 163.33 \text{억}$$

(50.56 + 14.02 = 64.58억)

3%하락

100억 + 100억

증여  
특례

(9억)

## 가업승계증여특례 실시후

(단위: 억원)

		기업가치 상승	유지	하락
No action	일반상속	133.70	77.90	41.23
	가업상속	0	0	0
증여특례	일반상속	110.82	82.92	64.58
(9억)	가업상속	14.02	14.02	14.02
일반증여	일반상속	119.36	91.47	74.56
(40.8억)	가업상속	63.57	63.57	63.57

증여특례는 현재가치로 재산가액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을 때 유효한 전략임**

- 기업의 미래성장성이 애매하면 증여특례를 주저하게 됨
- 만일 다른재산이 없이 가업주식만 있는 경우, 가업승계증여특례후 가업상속공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증여특례시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음

## ■ ■ ■ ■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증여특례 목적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현재의 공제한도 10억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사후관리요건 등

##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

	구 분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증여특례
사후관리요건	업종유지	해당	해당
	고용유지	해당	해당없음
	자산처분 제한	해당	해당없음
	지분처분 제한	해당	해당
	사후관리기간	5년	5년
제약요건	사업무관자산	해당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해당없음

## ■ ■ ■ ■ 극단적인 가정

(사례1) 가산디지털단지 공장형아파트 제조업, 장부상 순자산가치 100억

- 가업승계증여특례 100억 실시(세금 9억)
- 5년간 직원정리, 공장형아파트등 자산 처분(150억)
- 사후관리기간 5년 경과후 폐업
- 30년후 상속개시 100억에 대한 상속세 27.9억-9억 = 18.9억

(사례2) 제조업, 회사현금 50억보유, 기업가치 100억

- 가업승계증여특례 50억 실시(세금 4억)
- 사후관리기간 5년 경과후  
증여특례로 받은 주식 50억 자사주매각, 양도소득세 0원  
→ 당장 세금 4억내고 회사의 잉여금 50억 인출

## ■ ■ ■ ■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 증여특례의 본래 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증여특례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필요
  - 증여특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이 아닌 그 이상으로 해야 할 필요





## 가업승계지원제도에서 상속인/수증자 요건

**상증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18세 이상의 **상속인**
-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
-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등의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
-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또는 천재지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시 2년이내도 인정

## ①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019-법규국조-4229, 2022.04.14.)

## ②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0-법규재산-5040, 2022.01.28.)

## ③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상속증여-2401, 2019.03.05.)

## ④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 가업승계증여특례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 거주자
- ① 자녀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적용  
(2015.2.3일부터 허용)
  - ②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손자녀도 가능
  - ③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야  
(조심2017부3614, 2017.12.11)
  - ④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재산세과2081, 2008.08.01)
  - ⑤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면2020상속증여3200, 2020.09.29)

# (통계표) 가구당 자녀수

		2015	2018	2021	2024
이상자녀수	평균이상자녀수	2.25	2.16	1.98	1.93
	자녀수별구성비_1명이하	7.2	10.3	14.5	16.8
	자녀수별구성비_2명	65.9	63.6	69.7	67.7
	자녀수별구성비_3명	19.9	17.0	9.0	7.4
	자녀수별구성비_4명이상	5.7	4.1	1.7	1.2
	자녀수별구성비_잘모름	1.3	5.0	5.0	6.9
출생아수	평균출생아수	1.75	1.75	1.57	1.54
	자녀수별구성비_1명이하	31.5	33.3	43.0	45.1
	자녀수별구성비_2명	55.9	53.3	46.0	43.4
	자녀수별구성비_3명	11.6	12.1	9.6	10.3
	자녀수별구성비_4명이상	1.0	1.3	1.4	1.2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과 출산조사」

## ■ ■ ■ ■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 출생률 저하,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등에 맞춰
  - 거주자 제한 요건을 없애야
  - 자녀 또는 상속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가업을 승계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END OF DOCUMENT**